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4.11.6.(수) 조간	배포	2024.11.5.(화)
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대부업검사1팀 대부업검사2팀	책임자	팀 장	김소현	(02-3145-8272)
		담당자	선임검사역	김용겸	(02-3145-8273)
		책임자	팀 장	김상희	(02-3145-8280)
		담당자	검사역	박기택	(02-3145-8283)

대부업계의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준비실태 사전 현장점검 결과 및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

1 **금융감독원**은 **소액 채무자** 비중이 높고 **내부통제**가 **열위**한 **대부업계**(30사)를 대상으로 **금융권 최초**로 **현장 점검**을 실시하였음 ('24.9.5.~10.16.)

○ 특히 **대부업 전산시스템 개발업체**를 **입회**시켜 주요 내용을 **전산프로그램**에 **반영**되도록 하여 관련 내부통제가 **대부업계 전반**에 **전파**되도록 **유도**하였음

2 점검대상 대부업체는 **연체부담 완화**, **추심제한**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한 **전산 통제장치**를 **구축**하는 등 **기본적인 내부통제**는 **마련**하였음

○ 다만, 채권회수 **사전통지 절차**, **추심내역**의 **체계적 기록·관리**,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**적극적 채무조정** 등 **미흡사항**을 **개선**하도록 **지도**하였고,

○ **주요 미흡사례**를 업계에 **전파**하여 **법 시행 계도기간('24.10.17.~'25.1.16.)** 내에 **개선**되도록 하였음

3 **점검 미실시 회사**에 대해서는 **대부업협회 주관**으로 **자율점검**을 **실시**하고, **미흡업체**에 대해 **금융감독원**이 **감독**을 **강화**할 **예정**임

4 **대부업 이용자**에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**신설**되는 **권리 보호 장치**를 **안내**해 드림

❶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**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**가 **도달하지 않은** 경우, 대부업체 **원금 일시상환 요구**에 **응하지 않아도** 됩니다.

❷ **채권 양도예정 통지서**에 **장래이자 면제대상 여부**가 정확히 **표시**되었는지 **확인**하세요.

❸ **추심 연락횟수**가 **7일 7회**로 **제한**되며,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**금감원*** **등 관계기관**에 **신고**하세요.

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fss.or.kr) ⇒ 민원·신고 ⇒ 불법금융신고센터 ⇒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

Ⅰ. 점검결과 개요

□ 금융감독원은 **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시행('24.10.17.)** 전 **30개 대부업체**를 대상*으로 관련 **내부통제 구축 현황** 등 준비실태를 **점검**하였습니다.

*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3%에 불과하나, **법 시행으로 영향**을 받는 **개인채무자**중 **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%, 채권금액 기준 34%에 해당** (개인연체채무, 개인NPL채권 기준)

○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는 **대부업계**는 연체율이 높고, 추심·양도가 빈번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의 **주요 규제대상**이나 **내부통제**는 **타 업권 대비** 상대적으로 **취약한 점**을 고려하여 **현장점검**을 **실시**하였습니다.

<대부업자 현장점검 개요>

- **(점검대상)** 30개 대부업자 (부산, 광주, 대구 소재 3개사 포함)
- **(일　　정)** '24. 9. 5. ~ 10. 16.(연인원 122명)
- **(점검내용)**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시행 준비상황 및 내부통제장치 구축현황 등

□ 점검대상 대부업체는 **연체이자 제한, 양도제한, 추심총량제** 등 **주요 규제**에 대해 대부분 **전산시스템**을 통한 **통제장치**를 **구축**하였으며,

○ 신설 제도를 **내규**에 **반영**하였고, **채무자 안내 필요사항**은 **표준양식**에 따라 **개정**하는 등 **기본적인 내부통제**는 **마련**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□ 다만, **채무자 안내**가 **일부 누락**되거나, **추심총량 관리**가 **다소 미흡**한 **사례**가 일부 확인되었는 바,

○ 금융감독원은 **주요 미흡사례**를 **업계**에 **전파**하여 **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('24.10.17.~'25.1.16.) 내**에 **개선**을 **유도**하고자 합니다.

□ 대부업계는 **개인채무자보호법**의 **모든 규제**가 **적용**되는 **소액 개인금융채권**의 **비중**이 **절대적***인 만큼

*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모든 규제가 적용되는 3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 비중이 90%를 상회

○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**업무 전반**을 **채무자 관점**에서 **정비**하고,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사전·사후 점검**을 **강화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Ⅱ. 주요 미흡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

1	연체관리*	☑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·도달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☑ 매입추심업자도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 변경 필요

* 1)**연체**로 인한 **기한이익 상실·주택경매** 등 **채권회수조치**시 **사전통지 의무화 및 도달주의로 전환,** 2)연체시에도 **만기 미도래 부분**에 대한 **연체이자 부과 금지**

□ 대부업체는 사전통지서가 **채무자**에 **도달**된 경우에만 기한이익 상실 및 주택경매 등의 **채권회수조치**를 **진행**할 수 있도록 하고, **기한 미도래 부분**에는 **연체이자**가 **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**을 **변경**하였습니다.

○ 다만, **일부 업체**의 경우 통지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가 수기로 확인하는 등 **도달일 관리**에 **오류**가 **발생**할 **우려**가 있으며,

○ **일부 매입추심업자**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*로 **연체이자 산정 시스템**을 **변경하지 않은 사례**가 확인되었습니다.

* 통상 추심이 곤란한 상각채권 등을 명목원금의 20% 수준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원금 이외에 최초 계약상 연체이자까지 추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

➡ 채권회수조치는 채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**통지서 발송 및 도달 관리**에 **오류**가 **발생하지 않도록** 관련 **통제**를 **강화**하고,

연체이자는 **법규**에 따라 **정확히 계산·적용***되어야 하므로 **매입추심업자**도 실제 추심여부와 관계없이 **시스템**을 **변경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* 현행 방식대로 계산·표기되는 경우 추심안내, 채무확인서 작성, 소송 등 수행시 채무금액이 부당하게 안내 및 추심될 가능성도 있음

2	양도제한 및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*	☑ 채권 매각시 양도횟수 등 양수인에게 반드시 전달 ☑ 상각채권 등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안내 철저

* **채무조정 신청**채권, **3회이상 양도 채권** 등이 양도 제한되고, **상각 채권·장기 연체채권** 등은 양도 이후 **장래이자 면제**

□ 대부업체는 **양도이력·횟수, 양도제한 사유 해당 여부**를 **채권별**로 **전산시스템**에 **기록·관리**하여 **양도금지 채권**의 **거래**를 **차단**하고 있으나,

○ 채권 매매시 현재 양수도계약서에는 **양도이력·횟수, 상각채권 여부**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,

○ 장래이자가 면제되는 상각 채권 및 장기 연체채권 양도시 **면제사실**을 채무자에게 **통보**하는 **절차**가 **누락**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
➡ 부당한 채권양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도계약시 필요정보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**전달**하도록 **거래관행**을 **개선**하여야 하며,

아울러, 장래이자 면제여부가 누락없이 채무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**양도예정 통지서 및 매각통지서**에 해당사항을 **기재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3	**추심총량제 등 추심행위 규제***	☑ **방문·전화·우편발송· 등 모든 연락 전산시스템에 기록·관리** ☑ **법규상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만 카운팅에서 제외**

* **채무자보호 저해 채권**에 대한 **추심금지**, **추심총량제**(7일 7회), **추심연락 유예**(재난 등 발생시)·**유형제한 요청권 신설**

□ 대부업체는 **추심금지·제한 사유** 및 **추심이력(횟수)**을 전산**시스템**에 **기록·관리**하고, 해당 채권 등에 대해서는 **추심담당자**의 **채무자 정보*** **열람 차단·알림 팝업** 등 **추심차단 장치**를 **마련**하였습니다.

* 채무자의 주소, 연락처, 세부 채무내역 정보 등

○ 다만, 일부업체는 **❶추심 횟수**가 **자동산정·안내**되지 **않거나** **❷추심 횟수 산정 제외대상**을 **구분관리**하지 **않아**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수 있는 등 **추심총량 통제**가 **다소 미흡**하였습니다.

➡ 추심행위가 법규에 따라 적정히 통제되기 위해서는 1)**방문·전화·우편발송·문자** 등 **모든 연락**을 **전산시스템**에 **기록·관리**하고,

2) **법령에 의한 통지** 등 **법규상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**인 **연락만**을 **제외**하도록 **연락유형**을 **명확히 구분관리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4	**자율적 채무조정 절차 구축, 운영***	☑ **채무조정 세부기준 보완 필요** ☑ **입법취지에 맞게 대부업계의 적극적 채무조정 필요**

* 채무자의 **채무조정 요청권**을 **신설**하였으며, 대부업체는 **내부 조정기준**에 따라 **심사**하고 **그 결과**를 **통지**하여야 함

□ 대부업체는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 따라 **세부 심사기준**을 **마련**하고 **조정요청**부터 **조정성립까지 단계별**로 **업무 프로세스**를 **정비**하였으나,

○ 일부업체는 **변제능력** 등을 **고려하지 않는 등 조정기준**이 **다소 부실하고, 홈페이지**를 **구축하지 않아 필요서류** 등 **안내**가 **미흡**할 우려가 있습니다.

➡ **채무조정 세부 심사기준**을 **합리적**으로 **마련·운영**하고 **조속**히 **홈페이지**를 **구축**하여 대부이용자에 대한 **안내**를 **강화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특히 자체 채무조정 제도는 **연체중**인 **채무자**의 **선제적 재기 지원** 외에 대부업체에게도 **연체채권**의 **조기 회수**의 이익이 있는 만큼 금감원은 **입법취지**에 맞게 **대부업계**의 **적극적 채무조정**을 **당부**하였습니다.

Ⅲ.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

□ 개인채무자보호법은 **연체·추심 부담 완화**, **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** 등을 위한 **각종 장치**를 **신설**하였습니다.

➡ 주요 내용 및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**대부업 이용자**는 **신설**된 **채무자 권리보호장치**를 **적극 활용**하시기 바랍니다.

1 연체 관리

□ (3천만원$^{미만\ 개인채무자}$)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**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**가 **도달하지 않은 경우**에는 대부업체의 **원금 일시 상환 요구**에 **응하지 않아도 됩니다.**(연체이자 납입시 기한의 이익 유지)

□ (5천만원$^{미만\ 개인채무자}$) **만기전 변제 독촉** 등 추심연락을 받은 경우 **만기 미도래 부분**에 대해 **연체이자**가 **부과**되었는지 **여부**를 **확인하세요.** 해당부분에 대한 **이자**는 **무효**이므로 **반환청구**가 **가능**합니다.

2 양도 제한

□ (3천만원^{미만} 무담보^{개인채무자}) **연체 1년 초과**한 채권으로서, **최근 1년 이내 원금, 이자 변제내역이 없는 채권**은 채권양도 이후의 장래이자가 면제됩니다.

양도예정 통지서(매각통지서)**에 장래이자 면제대상 여부**가 정확히 **표시**(안내) 되었는지 **확인**하세요

□ (3천만원^{미만} 무담보^{개인채무자}) 법 시행일 이후 **3회**를 **초과**하여 **양도**된 경우 대부업체에 환매수 등을 통해 **양도 철회**를 **요구**할 수 있습니다.

3 추심 행위

□ (전체[개인채무자]) 각 채권별로 **추심**을 위한 **연락횟수**가 **7일 7회**로 **제한**됩니다.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**금감원*** **등 관계기관**에 **신고**할 수 있으며, 대부업 이용자는 **추심연락 내역**을 **증거**로 **남겨둘 필요**가 있습니다.

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fss.or.kr) ⇒ 민원신고 ⇒ 불법금융신고센터 ⇒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

□ (전체[개인채무자]) **일상이 저해되는 시간대**에 **방문·전화·우편·문자·모사 중 2가지** 이하의 수단에 대한 **추심연락 제한**(주 28시간 범위)을 **요청**할 수 있습니다.

□ (전체[개인채무자]) **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상황, 가족·본인의 사고, 질병, 사망, 혼인 등 소명시 최대 3개월**까지 **추심연락 유예**(1회 한정)가 가능합니다.

4 채무 조정

□ (3천만원[미만 개인채무자]) 연체중인 채무자는 업체 **홈페이지 등**을 통해 **조정절차·필요서류** 등을 **확인**하고 **대부업체**에 **조정신청**이 **가능**합니다.

- 다만 조정기준은 **업체별로 상이**하며, 신청시 **변제능력에 관한 자료**를 **제출**하여야 하고, **미제출시** 조정이 **거절**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(3천만원[미만 개인채무자]) **조정신청시** 조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**기한의 이익 상실**이 **유예**되며, **양도 및 추심**도 **제한**됩니다.

Ⅳ. 향후 계획

□ 금감원은 **현장점검 미실시 회사**에 대해서는 **대부업협회 주관**으로 **대부업체**의 **자율점검**을 **실시**할 **예정**이며,

○ 향후에도 **신설제도**가 **입법취지**에 맞게 **작동**할 수 있도록 **협회 자율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** 등에 대한 **상시감시·검사** 등 감독을 강화하고 **개인채무자**의 **권익**이 **보호**받을 수 있도록 **노력**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